

##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9호  
일부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200호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년 7월 19일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년 12월 23일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복지교육국장, 시민안전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 1인
3. 도시·교통·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1. 1>

**제7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 11. 1>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
2.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같은 종류의 대중교통(버스 또는 택시 등)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 외 할증요금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와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오산시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8>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오산시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④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계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이 위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

**제2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8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4 까지 생략

②5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1 까지 생략

①2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①3 부터 ①7 까지 생략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부터 ④3 까지 생략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⑰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부터 ㉔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